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희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반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신속한 재난 복구 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속한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항, 제29조제1항)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조건 완화(안 제14조제8항, 제32조제2항, 제81조제1항)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하고,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연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하는 한편,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

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사용허가시 사용료 면제근거 신설(안 제17조

제5항, 제75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물품을 대부할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 및 물품 대부료 면제 근거 마련

라.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추가 지정(안 제48조의2)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 지정

마. 변상금 부과 규정 명확화(안 제81조제5항, 제6항)

변상금을 미루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요건을 명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9. ~ 4.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재해 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4조제8항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6회”를 “12회”로 한다.

제17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재해 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2항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6회”를 “12회”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75조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단서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을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제3항”으로 한다.

- ⑤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거나 나누어 내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조례로 정하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 분할납부 등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전에 변상금이 납부 고지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이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② (생략)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 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 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u> <u>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u> <u>사용허가를 하는 경우</u>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 생하여 <u>재해복구 또는 구호의</u> <u>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u> <u>우</u>
12. ~ 24. (생략)	12. ~ 2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 ① ~ ⑦ (생략)	제14조(사용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u>100만원</u> 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 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⑧ ----- ----- ----- <u>50만원</u> ---- ----- ----- ----- ----- -----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⑩ (생략)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⑥·⑦ (생략)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15. (생략)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2회)-----
-----.

⑨·⑩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

-----.

1. ~ 15. (현행과 같음)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17. ~ 28. (생략) ② ~ ⑧ (생략)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u>100만원</u>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u>6회</u>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4. (생략) <u><신설></u>	<u>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u> 17. ~ 28.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u>50만원</u>----- ----- ----- ----- ----- ----- ----- ----- ----- ----- <u>12회</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국가공간정보 기본법</u>」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
---	---

② (생략)

제75조(무상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 4. (생략)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

사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무상대부) -----

1. -----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

2. ~ 4. (현행과 같음)

제81조(변상금) ① -----

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
 은 징수하지 않는다.

 -----.

50만원-----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변상
 금을 미루거나 나누어 내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다
 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조례로 정하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⑥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제3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88